

인권 자료실		
등록일	등록번호	자료번호
	A3-5	244

외노협 제 2회 월례 심포지움

## 국제결혼 가정의 위기와 국적법 고찰

### 순서 >>

- 사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조미리 총무
- 제 1주제 : 국제결혼 가정의 사례보고
- 질의응답
- 제 2주제 : 국제규약에 비추어 본 국적법의 의미
- 제 3주제 : 개정 국적법의 의미와 한계
- 질의응답 및 토론

◦ 장소 :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제 2연수홀

◦ 일시 : 1998년 5월 20일 오후 3시-6시

---

주최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주관 :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여성외국인노동자 상담소

# 국제규약에 비추어 본 국적법의 의미

- 외국인노동자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

충실파 법대 서 철원 교수

## 1. 문제제기

새로운 국적법이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발효하지는 않고 6월에 발효할 예정이다. 본고는 신국적법<sup>1)</sup>이 발효하면 국제결혼한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논의를 집중한다.

현행 국적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그 첫째가 부계혈통중심주의이고, 둘째가 남편중심주의이고, 셋째가 단일국적주의이고, 넷째가 가족국적동일주의이다. 이 중에서 부계혈통중심주의와 남편중심주의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신국적법은 여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남녀평등의 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하향평등화로 되어서 잘 운용되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현행국적법과 신국적법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에 적용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본다.

## 2.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현행국적법을 적용한 결과와 신국적법 적용한 결과의 차이

###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성근로자가 결혼한 경우

현행국적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결혼으로 인해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지 않으면 6월내에 원국적을 상실하지 않으면 된다.(현행국적법 제3조)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고(현행국적법 제2조 1항) 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되고 성과 본은 아버지의 것을 따르게 된다.(민법 제781조 1항)

1) 본고에서는 6월에 발효될 국적법을 신국적법이라고 칭하고 현재 적용되는 국적법은 현행국적법이라고 부른다.

신국적법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근로자는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한다.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으면 간이귀화절차를 거쳐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주소가 있는 때, 혹은 그 배우자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주소가 있는 때'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귀화에 필요한 요건인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지 않으면 원국적을 6개월이내에 상실하지 않도록 하면 되었던 것이, 신국적법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으면 최소한 2년을 기다려 귀화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출생한 자녀는 부모양계 혈통주의에 따르므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종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어머니인 외국인근로자가 원국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행국적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원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 신국적법에 의하면 간이귀화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어머니의 국적국에서 이 아이에게 그 국적을 부여하여 이중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에 있어 차이가 있다. 현행 국적법은 이러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일반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제도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을 뿐이었다.(현행국적법 제12조 5항) 신국적법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제도(신국적법 제12조)를 두고 있다. 국적선택제도에 의하면 22세가 되기전에 어느 국적을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22세가 되기전에 그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현행 국적법 상 허가사항이었던 것을 신고제로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기간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신국적법 제12조 2항)

이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의 원칙에 따라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신국적법 부칙에서 부가 외국인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외기쪽의 호적에 입적한다. 이것은 실제로는 어머니와 동일 호적에 편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된다. 외국에는 호적이 없으므로 입적할 호적이 없지만 한국 여성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므로 원래의 호적에서 제적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한국인으로 호적이 없을 수 없으므로 실무상 원래의 호적에 외국인과 결혼하였다는 사실만 기재하고 원래의 호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신국적법의 부칙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 자녀의 호적문제가 제기되는데 호적이 없는 한국인이 있을 수는 없으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예와 같이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외국인 남성근로자와 한국인 여성의 결혼한 경우

이 경우는 현행 국적법과 신국적법에서 별 차이가 없다. 어느 경우나 간이귀화 절차(현행국적법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강학상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신국적법에서는 법에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를 통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국적법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였다. 그런데 신국적법은 그 기간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주소가 있는 때, 혹은 그 배우자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주소가 있는 때'로 단축하여 가정의 안정을 조기에 이룰 수 있게 하였다.

## (3) 기타 외국인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입양 그 자체가 국적 취득의 사유는 아니므로 외국인이 한국인의 양자가 된다고 하여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국적법상 외국인이 한국인의 양자가 되면 현행 국적법상 제7조 1항 (1)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에 해당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국적이 없거나 6개월 이내에 구국적을 상실할 것'이라는 요건만 요구하는 특별귀화절차를 통하여 귀화할 수 있었다. 민법상 성년인 외국인도 한국인의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제도가 국적을 얻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생각에서 신국적법은 성년이 된 후에 한국인의 양자가 된 자는 특별 귀화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행 국적법은 남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 처와 미성년자인 자는 본국법상 반대 규정이 없는 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다.(현행 국적법 제8조) 이것이 여성인 처와 자녀의 독자적인 국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국적법은 처의 수반취득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국적취득시 같이 신청하면 귀화 등의 요건에 관계없이 부나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때 자도 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신국적법 제8조)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현행 국적법 제9조는 외국인의 처는 남편과 같이 하지 않으면 귀화할 수 없도록 하여 처의 국적선택권을 차별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국적법은 이를 삭제하여 남녀 모두 단독으로 귀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현행 국적법은 일률적으로 6개월이내에 원국적을 상실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현행국적법 제12조 7항) 그런데 미국법상의 미성년자의 국적상실금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6개월이내에 원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자가 있어 실무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신국적법은 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자에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다.(신국적법 제10조 2항 단서) 그러나 이것이 후천적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상황에 있는 자에게 원국적 상실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 (4) 소결

이와 같이 신국적법은 현행 국적법상의 기본원칙 중 부계혈통 중심주의와 남편 중심주의는 폐지하여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였다. 그 결과 가족국적동일주의도 완화되었다. 그러나 단일국적주의는 국적선택제도 등을 통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3. 평가와 문제점

#### (1) 가정의 보호권

현행국적법상 남녀 차별적인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남녀 모두 귀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소위 하향평등화 방향으로 남녀차별이 해결되었다. 한국인과 결혼하였다고 바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sup>2)</sup> 그러나 이것이 국제 협약상 인정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 자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권리와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도록 되는 위험은 없었다. 그런데 신국적법에 의하면 한국인과 결혼한 남녀 외국인이 공히 간이귀화 절차에 의하여 한국인이 되기전에는 국적 때문에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불안한 지위가 되었다. 외국인은 입국과 체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한국에 거주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다.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1년이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에 간이귀화 절차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주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을 연장 혹은 개신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

2) 실제로 자국민과의 결혼을 이유로 바로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만과 스위스 정도가 자국민과의 결혼을 이유로 국적을 부여하는데 두나라 공히 우리나라의 현행국적법과 같이 자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시에만 국적을 부여한다.

다. 이 경우 변경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는 국적법시행령상의 방문동거(F-1)나 거주(F-2)가 있다. F-1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원용할 수 있는 사유는 '국민의 배우자 또는子로서 F-2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이고 F-2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원용될 수 있는 사유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이다. 체류기간은 F-1인 경우에는 최고 6년이고 F-2의 경우에는 그 신분이 존속하는 기간이다. 체류자격의 변경과 연장은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의 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25조, 동시행령 제30조 31조)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에서의 이러한 변경은 잘되지 않고 출국하여 외교공관에서 비자의 발급과 재입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과 입국허가는 비자면제 협정이나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의 자유재량 사항인 것인 국제법 상의 원칙이다. 따라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의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거나 혹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할 위험성에 남녀 모두 노출되어 있다. 과거에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자 외국인만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신국적법에 의하여 여성 외국인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국제인권 규약은 가정의 구성원이 떨어져 살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B규약, 1990년 4월 10일에 한국에 발효)의 제23조 1항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 기초적 집단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은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A규약, 1990년 4월 10일에 한국에 발효)의 제10조 1항도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단위인 가정에 대해서는 특히 가정의 창설을 위하여 가정이 부양아동의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간동안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1991년 11월 20일 한국에 발효) 제9조 1항도 '아동이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 부터 격리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관련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아이와 부모의 격리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격리가 아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입국 거부나 절차의 지연으로 부나 모와 격리되는 것이 아이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재입국허가시에는 이러한 가정의 보호권이란 측면에서 재량성이 제한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신국적법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살펴 보자. 출입국절차, 외국인 등록 등 외국인에 적용되는 일반적 법규정에 한국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 이색적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에서 허용된 활동범위와 근무처 이외에 곳에서 근무하는 것과 이러한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문을 보다 구체화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활동분야와 근무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한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직업선택에 대해서만 특별한 규정을 둔 이 조항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가정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문이다. 특히 국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근로자도 계속 외국인의 신분으로 남아 있게 되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사례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직업선택 이외에 외국인등록이나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한 조항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둔 가정의 보호권이란 정신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한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던지 국적법상 별도의장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 (2) 자녀의 성과 본의 등록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차별문제

국적법 부칙에서 부가 외국인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은 우선 내외국인간의 차별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항은 외국인을 부로 둔 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국인을 부로 둔 자(외국인을 모로 둔 자까지 포함하여)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인을 남편으로 둔 여성 외국인 근로자가 자녀에게 자기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없다는 차별의 문제가 생긴다. 아동협약 제5조는 이름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동협약 제2조는 부모의 국적이나 출신성분에 따라 아동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B규약 제24조 2항은 '아동은 사회적 출신성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 즉시 이름을 가질 권리'를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협약 제16조 (g)는 성의 선택에 있어서 부인이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을 부로 둔 자에 대한 국적법부칙상의 특별대우가 이들 협약에서 허용되는 합리적인 차별인가의 문제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그나지 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므로 상세한 논의는 피한다.

국적법의 이 조항과 관련하여 보다 큰 문제는 이 조항이 외국인 남자근로자와 한국인 여성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일본국적법의 조항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일본은 이 조항을 이용하여 외국인 부의 성을 딴 아이의 출생신고시에 '일본사람이면 일본식의 성을 사용하여야지' 혹은 '외국인의 성은 본이 없어서 등록하기 곤란하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일본식의 성인 어머니의 성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부와 일본인 모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집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호적에 등록된 이름이 다르게 된다.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성과 함께 본을 기재하는 우리의 출생신고란, 한글이름의 출생신고도 최근에야 허용하는 공무원사회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사전규제가 없으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행위는 위에서 든 아동의 이름에 대한 권리의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의 자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아동협약은 제8조에서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자기의 자아성(identity)을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B규약 제27조의 위반문제도 제기된다. 동조는 소수민족이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4년 1월 4일에 한국에 발효) 제4조의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된다. 이 조항은 '어떤 인종적 기원을 가진 자가 다른 인종적 기원을 가진 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식 성과 본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

### (3) 이중국적의 문제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으로 이중국적을 가지는 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신국적법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선택제도, 후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포기제도를 채택하여 현행국적법과 마찬가지로 단일국적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한 이유로 대하여 '이중국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를 막기위하여' '국제법상 단일국적주의를 요구하기 때문' '국민의 정서가 이중국적에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 등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단일국적주의를 취한 이유중에 '국제법이 단일국적주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 무국적과 이중국적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이중국적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이 국적법의 저촉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혜이그협약, 이중국적의 감소 및 이중국적의 경우의 병역의무에 관한 스트라스부크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의 협약에서 이중국적에 관한 것은 혼인의 해소로 인한 원국적 취득시 혼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국적의 상실(제11조)뿐이다. 그 외의 조문은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야만 원국적을 상실하도록 할 수 있다는 무국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스트라스부르크협약은 이중국적에 보다 엄격하여 체약국의 국적을 임의로 취득하는 자는 원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993년의 이 조약 개정에서 체약국에서 출생하고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체약국국민간의 혼인인 경우에는 일방배우자가 자유의사로 타방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원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국적을 일정한 경우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의 요구는 이중국적을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을 나아가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각 국 국내법의 입법경향을 보더라도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1990년 스위스의 개정국적법,

1992년의 이탈리아의 개정국적법도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선천적 이중국적에 대해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일본의 법무성이 외무성을 통하여조사한 이중 국적 방지제도의 실정이라는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국 15개국 중에서 국적선택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태국과 브라질의 2개국만이다. 이들 국가도 외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자국의 국적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국적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3)</sup> 일본도 1985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일본 국적을 선택한 일본국민은 외국 국적의 이탈에 노력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더라도 일본국적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는다.

이중 국적이 여러 가지 폐해를 일으킨다는 것도 이중 국적을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 이 아닌 어려운 문제이다. 이중국적을 인정하면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에 복잡한 문제가 있고, 신분을 속여 여러 가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분단국가로서 강제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중국적의 부인은 한국의 해외진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 재외교민 특히 재일교포와의 유대관계를 약화시키고 한국민의 해외진 출을 막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이 한국국적 을 취득하는 것을 막는 장애도 된다. 외국인력의 확보면에서 지금까지의 국적법은 물론이 고 신국적법도 외국노동력 유입을 막는데 급급한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만 국경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국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재 의 국제사회에서 단일 국적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의 여부를 생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중국적을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서 야기될 부정 적인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정서가 이중 국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발표자도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인 국민 정서가 현재의 경제난을 발생시킨 원인의 하나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도 생각했으면 한다.

#### 4. 결론

신국적법은 현행 국적법의 제일 큰 문제점인 남녀차별의 문제를 상당히 해소하였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배척적인 태도로 인하여 가정의 보호권, 아동의 자아유지권 등은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제도

3) 諸外國에 있어서의 重國籍 防止制度의 實情에 관하여, 民事日報, 제51권 6호 (1996. 6), (김경 득, “국적법개정과 재일한국인,”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2호(1997), p. 61에서 재인용).

를 만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입법의 어려움상 새로운 제도의 마련에 시일이 걸리면 기존의 출입국관리법, 자녀의 성과 본 등록 등의 운영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만드는 가정과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만들고 해당 공무원이 이를 숙지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조치라도 우선 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도 인권의 보호와 국제 사회의 경향을 고려한 장기적인 국익의 차원에서 재검토되었으면 한다.

# 개정국적법의 의미와 한계

손광운(변호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대표)

## 1. 개정 국적법

국적법이 97. 12. 13 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98. 6. 14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서 관련되는 민법규정(781조 제1항)은 부칙규정에 터잡아 이미 개정되었다.

그리고 호적법도 98. 5. 15.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날 의결되었다. 역시 98. 6. 14.이 시행일로 규정되어 국적법시행과 보조를 맞춰 관련법규 모두가 완비된 상태가 되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통령인 국적법 시행령과 법무부령인 국적법시행 규칙도 98. 6. 14.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 개정국적법이 갖는 의미

### 가. 남녀평등

개정국적법의 핵심은 자녀의 선천적인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한데 있다.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 부(父)를 기준으로 자녀의 국적을 정했던 부계혈통주의를 포기함으로써 헌법상의 남녀평등 규정에(헌법 제11조 제1항)에 합치되는 법개정이 이뤄 진 셈이다.

이미 90년도에 민법규정중 가족법부분은 남녀평등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된바 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상속지분 비율이 똑같이 되었고 남자의 호주승계로 인한 상속지분

차별도 없어졌다.

그리고 이혼할 때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했다.

그런데 유독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가족법이라고 할수 있는 국적법에서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배어 있어 남녀를 차등하는 조항이 잔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 나. 국제사회의 헌법준수

남녀평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헌법이라 할수 있는 UN 여성차별철폐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자녀의 국적취득등과 관련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제 9조)

이 협약은 1981년에 발효되어 95. 12. 현재 144개국이 비준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도 90번째 서명국이 되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을 했던것이니 국제적인 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 다. 시대흐름에 합류

이번 국적법 개정은 세계의 흐름에 합류하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와 문화전통이 유사하고 남성위주의 사고방식을 지닌 일본조차도 이미 10년전에 부계혈통주의를 포기했다.

중국은 80년경 국적법을 최초제정할때부터 이미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했고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1973), 서독(1984), 스위스, 덴마크(1978), 스웨덴, 노르웨이(1979), 포르투갈(1981), 스페인(1982), 오스트리아, 이태리(1983), 그리스(1984)등도 모두 해당 년도에 부모양계주의로 바꾸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입법조류에 부응하게 되었다.

#### 라. 가족가치의 새 경향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인 탓이 있지만 유난히 배타성이 강한 민족의 특성에 비추어보면 이번 국적법 개정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과거에는 국제결혼이나 혼혈아가 급증하는 것을 생각할수 없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별다른 문화 충격도 느끼지 못할정도가 되었다.

96년말 12. 현재 정부의 공식집계로 210,494명(산업기술연수생 68,020명, 합법취업자 13,420명, 불법체류자 129,054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자

체가 우리에게는 90년대의 큰 변화중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번에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민법규정은 단 한조항만이 개정되었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도 남다르다.

개정된 민법 781조 제 1항 단서에 따르면 “부가 외국인인때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고 모가(母家)에 입적할수 있다.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조항에 따르면 혼혈아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부(父)의 성을 따르거나 모(母)의 성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부장적인 가치구조가 남아있는 우리 현실에서 자녀의 성이 모친과 같게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생각지도 듣지도 못했던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가진 자녀가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개정된 조항은 1개에 지나지 않지만 이 때문에 예견될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에 ‘조용한 혁명,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 한계

#### 가. 불법체류자가족의 문제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국적법의 개정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불법 체류하고 있는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가족과 그들 자녀들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되고 인도주의적인 문제등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이 불법 체류의 신분을 지닌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여 만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들중 불법 체류자가 7-80%인 우리 현실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렇다.

이런 가족들이 국적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 나. 자녀

원칙적으로 자녀들의 국적취득은 큰 문제가 없다.

구 국적법규정에 의해서도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

에 터잡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 자녀가 모의 호적에 등재되어 사실상 미혼모의 형식을 띠는 관계로 부모들이 기피해온 것이다.

이미 태어난 자녀들은 개정된 국적법 부칙7조에 따라 “법시행일 전 10년동안에 한국인을 어머니로 하여 출생한 자녀로서 그 어머니가 현재도 한국인인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뒤에서보는 것처럼 자녀의 부인 불법체류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여전히 모의 호적에 등재되어 미혼모의 형식을 유지하게 되므로 이 국적법 개정을 계기로 자녀들의 국적취득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되면 자녀들이 겪은 학교취학이나 의료보험 혜택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 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남편의 국적문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개정으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남편의 국적취득은 매우 어렵다.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국적법 개정으로 온전히 가정을 되찾게 될것이라고 기대하던 불법체류자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런 대목이다. 남편의 국적취득은 개정된 국적법 제 6조 제 2항에 터잡아 간이귀화 신청을 해야된다. 그런데 그 요건이 엄격하다.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은 합법적인 체류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게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의 경우 “불법체류간은 귀화에 필요한 국내체류기간으로 산입하기 어렵고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만큼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요건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불법체류사실이 해소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귀화를 허가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법부무. 신국적법해설 101면) 이 해설에 따르면 ‘자진 출국하여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안의 적법한 절차로 입국할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권유도 막연하기 그지 없다. 출국한 상태에서 불법 체류 사실 때문에 비자심리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라. 딜레마

불법 체류자 가족의 문제는 딜레마에 빠진다.

한편으로는 가족의 실체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인도주의적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출입국관리법등 실체법 위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특히 이들 가정의 자녀들 문제로 돌아가면 더욱 곤혹스럽다.

국적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현실은 개선될 기회가 없을 수 있는 탓이다.